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차 경 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구 지 연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차 경 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구 지 연

인 준 서

구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퇴직의 지연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했으며, 노후준비 자금에 대한 관심과 준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노후 자금의 준비는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안정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불입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취약한 계층인 여성, 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도 노후소득 보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통한 노후저축의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연금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에 따라 가계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특성과 미가입가계의 미가입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전국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 가계의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를 주로 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집단 간 평균비교(t-test, ANOVA), 교차분석(X^2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를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가계와 미가입가계로 분류한 결과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278명(55.3%)이고, 미가입가계는 225명(44.7%)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가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수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직업, 고용형태, 배우자 고용형태, 자가보유 여부, 월평균 가계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노후준비관련 특성의 변수는 예상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현재 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하는 생활비 비중, 노후준비 정도, 은퇴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개인연금 미가입가계 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

며, 교육수준이 높으며, 본인은 안정적인 직업인 경우가 많고, 배우자는 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많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미가입가계보다 예상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짧고, 현재 경제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이 높으며, 현재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비중은 낮지만 실제 비용은 높고, 노후준비 방법과 금액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에 대해 미가입 이유와 가입의향을 파악한 결과, 미가입 이유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개인연금 납입금이 부담된다’이고, 두번째로 높은 비율은 ‘수수료 높고, 해지의 어려움과 상품이 복잡해서’, 세번째 높은 비율은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와 ‘연금보다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것을 선호해서’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연금 미가입가계(n=225)를 대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121명(53.8%)은 가입할 의향이 있고, 104명(46.2%)은 가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상태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한 연금상품과 가입한 상품의 개수와 가입한 개인연금의 평균 가입기간과 평균 연간 납입액을 분석하였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278가계 중 연금저축(세제 적격)상품에 가입한 가계는 228가계(연금저축신탁 46가계, 연금저축펀드 39가계, 연금저축보험 185가계)이고,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상품에 가입한 가계는 104가계(일반연금보험 55가계, 변액·자산연계형 연금보험 55가계)로 나타났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가계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가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평균 가입기간은 8.62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231.05만원으로 나타났고, 연금저축(세제 적격)의 평균 가입기간은 8.54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277.86만원이고,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의 평균 가입기간은 8.63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314.57만원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계를 가입유형에 따라 가계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금저축(세제 적격) 가입가계(n=174),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가입가계(n=50), 중복가입가계(n=54)로 나누어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후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연금저축 가입가계가 연금보험과 중복가입가계 보다 정규직인 경우 많이 나타났고, 노후준비 관련 특성에서는 연금저축과 중복가입가계가 연금

보험 가입가계 보다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게 나타났고, 연금보험 가입가계와 중복가입가계가 연금저축 가입가계보다 노후준비에 대한 충분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섯째,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 관련 변수에서는 노후준비방법과 금액에 대한 충분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문제제기 | 1 |
| 2. 연구목적 | 4 |
| II. 선행연구 고찰 | 5 |
| 1. 개인연금 관련 개념 | 5 |
| 1) 개인연금 제도 | 5 |
| 2) 개인연금 유형 | 8 |
| 3) 개인연금 가입 현황 | 16 |
| 2. 개인연금 가입 관련 선행연구 | 18 |
| 1) 개인연금 가입결정 관련 연구 | 18 |
| 2) 개인연금 보유특성 관련 연구 | 20 |
| 3) 연금퍼즐 관련 연구 | 22 |
| 3.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5 |
| 1) 사회·경제적 변수 | 25 |
| 2) 은퇴에 대한 기대·태도 관련 변수 | 30 |
| 2) 노후준비 관련 변수 | 31 |
| III. 연구방법 | 36 |
| 1. 연구문제 | 36 |
|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 37 |
| 3. 측정도구의 구성 | 37 |
| 1) 사회·경제적 특성 | 37 |
| 2) 은퇴에 대한 기대·태도 관련 특성 | 38 |
| 3) 노후준비 관련 특성 | 39 |
| 3) 개인연금 가입 관련 특성 | 40 |

| | |
|---|----|
| 4. 분석방법 | 42 |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43 |
| 1. 조사 대상자 가계의 일반적 특성 | 43 |
| 1) 사회·경제적 특성 | 43 |
| 2) 은퇴에 대한 기대와 노후준비 관련 특성 | 45 |
| 2.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 47 |
| 1)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 47 |
| 2)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은퇴 기대와 노후준비 관련 특성 비교 | 51 |
| 3)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미가입 이유 | 54 |
| 3.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특성 | 57 |
| 1)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현황 | 57 |
| 2) 개인연금 가입유형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 62 |
| 4.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6 |
| V. 결론 및 제언 | 69 |
| 1. 요약 및 논의 | 69 |
| 2. 결론 및 제언 | 71 |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 1>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비교 | 8 |
| <표 2> 연금저축상품의 종류 | 11 |
| <표 3> 연금보험상품의 종류 | 15 |
| <표 4>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현황 | 16 |
| <표 5> 연금저축 계약유지율 | 16 |
| <표 6> 연금저축의 금융권역별 비중 | 17 |
| <표 7> 은퇴태도 측정문항 | 39 |
| <표 8> 개인연금 가입 상품 측정 문항 | 40 |
| <표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44 |
| <표 10>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와 은퇴기대 관련 특성 | 46 |
| <표 1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여부 차이검증 | 50 |
| <표 12> 노후준비 특성과 은퇴기대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여부 차이검증 | 53 |
| <표 13>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미가입 이유 | 56 |
| <표 14>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가입의향 | 56 |
| <표 15>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상태 | 59 |
| <표 16>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 상품별 보유기간과 납입액 | 61 |
| <표 1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유형 차이검증 | 63 |
| <표 18> 노후준비특성과 은퇴기대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유형 차이검증 | 65 |
| <표 19> 로지스틱 분석-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68 |

I.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퇴직의 지연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했으며,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과 준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노후자금의 준비는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안정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가구주의 76.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0.1%와 비교하면 많이 증가 하였으나, 조사대상자의 55.4%가 노후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하였고 15.5%가 예·적금을 선택하였으며, 11.6%가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소득대체율¹⁾, 기금 부족 등의 문제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노후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층 노후보장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었으나 아직은 도입률이 낮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도입률은 더욱 낮을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등의 문제점²⁾이 나타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선행연구(김원섭·강성호, 2007; 이용하,

1)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7%(기획재정부, 2014)

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14.6) 전체 사업장 대비 16% - 자료 : 금융감독원
300인 이상 : 76%, 300~100인 : 57%, 100~30인 : 38%, 30~10인 : 38%, 10인 미만 : 11%
-퇴직연금 IPR 만기유지율 : 14%, 퇴직연금 수급 형태(금액기준) : (일시금) 92%, (연금) 8%

2011; 오진호·임두빈·전용일, 2013; 기획재정부, 2014)의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되는 비율은 낮다.

이처럼 노후보장의 3층 체계 중에서 1층인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보장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2층인 퇴직연금은 직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뿐 아니라 도입역사가 짧아 안정적 정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3층인 개인연금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개인연금은 노후준비 수단으로 크게 선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도입된 이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불입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취약한 계층인 여성, 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도 노후소득 보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 가입자는 2013년 현재 850만 명으로, 이는 20~60세 인구(약 3천만 명)의 약 30%에 해당된다.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연금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금융감독원, 2013).

현재 개인연금제도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인 연금보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는 약 400만 명, 비적격 연금 가입자는 약 550만 명이며, 이 중 약 100만 명은 중복가입자로 추정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3).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재무적 요인을 분석하거나(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문용필, 2012; 이윤호, 2012; 여윤경·이남희, 2012; 김재호, 2013),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된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분석하였고(주소현, 2011, 이찬희·정홍주; 2013; 이경우, 2013), 개인연금 불입액 관련 연구(문숙재·김연정, 1997; 주소

현·2011)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2차 자료나 패널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승훈·강성호·임병인, 2007; 주소현, 2011, 이경희, 2013; 김병권·우석진·안종길·빈기범, 2013 등)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가입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노후준비 특성, 은퇴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유형을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가입특성을 살펴보고, 개인연금의 가입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뿐 아니라, 노후준비 관련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은 개인연금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에 따라 가계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특성과 미가입가계의 미가입 이유를 파악하며,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의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후준비 관련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연금의 가입가계와 미가입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노후에 대한 기대와 태도, 노후준비 방법 등을 비교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연금 가입가계를 대상으로, 개인연금 가입유형과 보유액, 보유기간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입유형(연금저축, 연금보험)별로 가계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연금 미가입가계를 대상으로는 미가입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정책의 수립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가계가 효과적인 노후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연금제도의 개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개인연금 관련 개념

1) 개인연금제도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3개의 층으로 구성된 다층보장체계를 시행중이고, 3층 구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1층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며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고, 2층 퇴직연금은 기업이 보장하는 사적연금제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3층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이다. 낮은 소득 대체율과 수급불안전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개인연금이란 보험회사, 은행 등과 같은 연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금전적 계약으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1994년 6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최초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으로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연금이라 칭하였다.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연금세제 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연금저축이 도입 되었고, 이를 신 연금저축 또는 신 개인연금이라고 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실질적 자산 가치 보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변액연금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 연금상품이 출시되었다(보험연구원, 2011).

현재 개인연금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고 연금수령 시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³⁾되는데, 총 연금액⁴⁾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낮은 세율(5.5%)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저축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 외 수령⁵⁾으로 지급받게 되면 해지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하여 소득공제를 환급해야 하고,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납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연금수령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연금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고, 2011년에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금우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개인연금 가입확대와 장기보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내 놓았다. 2014년에는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통해 금융권별 연금저축의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가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과 방안을 모색하며 개인연금 시장의 활성화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적연금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운용단계 및 수급단계에서는 위탁운용형 상품이나 의료비 인출 가능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개인연금 장기보유 시 운용수수료 할인을 통한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개인연금을 통합 관

3) 이 때는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를 적용함(금융감독원, 2008).

4)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 소득액의 합(금융감독원, 2008).

5) 연금저축의 해지 또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등(금융감독원, 2013).

리하는 별도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 수행과 감독에서 겪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개인연금의 유형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기준으로 크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데,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연금보험 등이 있다.

<표1>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비교6)

|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 |
|---------------|---------------------------|--|
| 도입 | 1994.6 | 2011 이후 |
| 판매 금융기관 | 생명보험회사 | 보험회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 및 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
| 가입대상 | 만20세 이상 국내거주자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
| 공제자 | 근로자 본인에 한정 | |
| 저축 기간 | 적립기간 | 10년 이상 만55세 이후 |
| | 연금지급 기간 | 적립기간 만료 후 5년 이상 |
| 소득 공제 | 범위 | 연간납입액의 100% |
| | 한도 | 400만원 |
| 과세 혜택 |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
| 연금 수령 | 비과세(10년 이상 유지 시) | 연령별 연금소득세(3.3 ~ 5.5%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적용), 총 연금액 6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일시금 수령 | 이자소득세(15.4%) 부과 | 기타소득세(22%) 부과 |
| 5년 이내 중도해지 |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 납입액의 4% 추정 |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원천징수 |
| 근거법 | 소득세법(2013. 8월부터) | |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연 400만원 한도)이 부가된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금융감독원, 2013).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조건은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1994년 비과세 개인연금저축(구 개인연금)⁸⁾이었으나,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연금저축(신 연금저축)⁹⁾이 도입 되었다.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신 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연금가입자격과 저축한도, 상품취급기관, 이자소득세,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세금등도 변화 하였다. 연금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에서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로 확대 되었고, 상품 취급 기관도 확대되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 비과세하는 방식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100%(300만원 한도)¹⁰⁾로 확대하는 대신 연금수령 시 과세하는 상품으로 바뀌다. 이후 2011년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¹¹⁾까지 상향조정하였다.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개인연금은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했었으나, 연금저축은 해지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하여 소득공제를 환급하게 했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어 세제적격의 소득공제 요건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보험연구원 금융보험해설(2011), 보험연구원 정기간행물(2011)의 내용을 참고로 연구자가 재구성.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0조의 2항.

8)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 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2013년 1월 1일로 법령에서 삭제, 시행령 제80조는 2013년 2월 15일 삭제.

9)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항. 시행령 제80조(연금저축). 2013년 1월1일로 법령에서 삭제, 시행령 제80조는 2013년 2월 15일 삭제.

10) 연금저축납입액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함(금융감독원, 2008).

11)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기여액을 합산한 한도임(금융위원회, 2013).

을 갖춘 경우 다양한 설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표2>).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판매되고,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판매되며,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된다.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납입방식이고, 적용금리는 적립금이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이다.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이고, 원칙적으로는 실적배당형이므로 예금자보호가 안되지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채권형, 주식형, 혼동형 등 3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고,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납입방식이며, 적용금리는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이다.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이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펀드자금을 전세계 시장의 주식과 채권, 실물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에 비해 투자 지역과 대상 상품이 넓은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정기납입방식이고, 적용금리는 공시이율¹²⁾이며,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되고 원리금이 보장된다.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과 종신형이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만 종신형이 있으며,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2013)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2회 미납

12) 공시이율이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매월 적립되는데 이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말한다. 공시이율은 시장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매월 변동한다(연금저축 길라잡이).

할 경우 연금보험 계약이 실효되고, 실효 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하며, 실효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 있다. 납입유예제도가 없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어렵고, 실효 후 밀린 납입금을 일시금에 부담하는 것이 납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계약 해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였다¹³⁾. 또한,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상품 전환을 원하는 경우¹⁴⁾,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금에 대한 부담금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출시되는 모든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대해 납입유예를 가능하게 하였고,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소화하고, 이전절차 개선을 통해 계약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2> 연금저축상품의 종류¹⁵⁾

| 구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
| 취급기관 | 은행 |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납입방식 | 자유납입 | | 정기납입 | |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 공시이율 | |
| 원금보장 | 원금보장 | 미보장 ¹⁶⁾ | 보장(최저이율보증) | |
| 예금자보호 | 5천만 원 | 미적용 | 5천만 원 | |
| 연금지급방식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중신(최대25년), 확정기간 | 확정기간 |
| 수수료부담주체 | 가입자(=계약주체) | | | |
| 소득공제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분 합산(年 400만원) | | | |
| 과세혜택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 | |
| 중도해지 시 | 원금 및 일정이자 지급 | | 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 | |

13) 실효상태인 계약(2011.9월 말 52.1만건)중에서 12개월 이내(2011.9월 말 ~ 2012.9월 말)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금융위원회, 2014).

14) 계약이전 건수(2011.12 ~ 2012.11) : 연감 7,802건(월 650건)(금융위원회, 2013).

15) 「연금저축 길라잡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보험연구원 금융보험 해설(2011)을 참고로 연구자가 재구성.

(2)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서, 현재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고 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생명보험회사에 판매하는 각종 보장성 특약(선택 특약) 가입을 통해 경제활동기 사망·질병 등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 2013).

연금보험의 유형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투자형인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일반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확정금리로 적립하는 금리확정형과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금리확정형은 추가 연금액은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변동금리형의 경우 적용 금리의 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투자형 연금 상품에 비해 연금액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일반연금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2002년 9월에 도입된 상품으로, 보험료 중 일부¹⁷⁾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실적 배당형 연금 상품이다. 투자성장에 따라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반연금보험 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거나, 펀드 실적이 악화될 경우 연금지급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계약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형태를 직접 선택하고, 다양한 부가 특약을 조립할 수 있으며, 펀드로 변경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보

16)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적립하여 보호함(보험연구원, 2011).

17) 총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

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2005년에 도입된 상품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연금상품이다. 연계자산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변액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회사에서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평가익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평가익 정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평가익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연금지급방법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이 있는데, 연금지급이 시작된 후에는 선택한 연금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 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하는 것이 좋다. 종신연금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액은 생존율이 높을수록 감소¹⁸⁾하기 때문에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연금이 개시되면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조기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 또 종신연금형은 다른 방식과는 달리 연금개시가 되면 중도 해약이 불가능하다¹⁹⁾는 단점이 있다.

확정연금형은 가입자가 정한 일정기간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확정지급기간 동안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지정된 수익자 또는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되어 연금을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생존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상속연금형은 연금개시시점까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적립액에서 발생하

18) 종신연금형은 연금액 계산 시 생존율이 반영되므로 생존자 수가 많을수록 연금수령자가 많아져서 1인당 지급받는 연금액은 줄어든다(금융감독원, 2008).

19) 연금 개시 후 임의해지를 허용할 경우 사망에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금개시 이후에는 중도해지를 불가능하게 한다(금융감독원, 2008).

는 이자를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적립액의 일체를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적립액의 이자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확정·종신연금형 보다 적지만, 적립액을 상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2013)는 연금보험이 예·적금에 비해 초기 수수료가 높고 상품이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금보험의 사업비²⁰⁾는 선취구조로 계약체결 시 비용을 계약 초기에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선취구조란 납입된 보험료 중 사업비를 먼저 차감한 후 잔여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가입초기에는 원금대비 수수료율 및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이 높으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수료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즉, 연금보험은 선취구조로 가입 초기에 수익률이 낮고, 해약 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낮아지는 제한점이 있다.

20) 설계사 수수료 등과 관련 된 계약체결비용과 회사운영비(급여, 임차료 등) 등에 관한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금융위원회, 2013).

<표3> 연금보험 상품의 종류²¹⁾

| 구분 | | 일반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 | 자산연계형연금보험 |
|------------------|--------------|--------------------------------------|----------------------------------|--|
| 제 도 개 요 | 취지 | 3층 보장 | | |
| | 도입 | 1994.6 | 2002.9 | 2005 |
| | 취급 | 생명보험사 | | |
| | 근거법 | 보험업법 | | |
| 상 품 내 용 | 금리 |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 | 실적배당형 (기납입보험료의 100% 최저 보증) | 실적배당형 (최저보증이율설정 보통 원금의 1 ~ 1.5%) |
| | 예금자보호 수수료 | 5천만원 | x | x |
| | 부담 주체 | 가입자(=계약주체) | | |
| | 보험료 적립방식 | 확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이자 부리 | 주식, 채권 등 펀드 투자 | 주가지수연계, 채권금리, 금리 스왑 등 특정자산연계 |
| 세 제 | 소득공제 | x | x | x |
| | 과세혜택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 |
| | 연금수령 | 비과세 | | |
| | 일시금수령 | 10년 이내 : 이자소득세(15.4%) 10년 후 : 비과세 | | |

21)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2013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3)개인연금가입현황

금융감독원(2013)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자는 850만 명으로 20 ~ 60세 인구(약 3천만명)의 약 30%에 해당된다. 이 중 연금저축 가입자는 약 400만 명이고, 연금보험 가입자는 550만 명이며, 약 100만 명은 중복 가입자이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개인연금의 적립금은 237조원이고, 이중 연금저축의 적립금은 86조원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151조원으로 집계되었다(<표4>). 공·사연금 적립금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은 약 32.7%이며, 이중 연금저축은 11.9%이고 연금보험은 20.8%이다.

<표4>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현황²²⁾ (단위 : 조원, %)

| 구분 | 09.12 | | 10.12 | | 11.12 | | 12.12 | | 13.9 | |
|-----------------|-------|------|-------|-------|-------|-------|-------|-----|------|-----|
| | 적립금 | 증감율 | 적립금 | 증감율 | 적립금 | 증감율 | 적립금 | 증감율 | 적립금 | 증감율 |
| 연금저축 (세제적격) | 51.9 | 59.6 | 14.8 | 68.1 | 14.3 | 78.8 | 11.6 | 86 | 9.1 | |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 83.8 | 98.3 | 17.3 | 108.9 | 10.7 | 137.1 | 20.3 | 151 | 10.1 | |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계약유지율이 5년 시점에서는 72.4%이고, 10년 시점에서는 52.4%로 나타났다(<표5>).

<표5>연금저축 계약유지율²³⁾ (단위: %)

| 구분 | 1차년 | 2차년 | 3차년 | 5차년 | 10차년 |
|----|------|-----|------|------|------|
| 평균 | 95.5 | 86 | 80.2 | 72.4 | 52.4 |

연금저축의 금융권역별 비중을 보면,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가 5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손해보험회사가 21.6%로 나타났다. 은

22) 금융감독원(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과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23) 금융위원회(2014)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4.1일부터 적용)

행의 경우, 2010년 12월에는 20.6%였으나 2012년 12월 16.0%로 비중이 점점 감소하였다(<표6>).

<표6> 연금저축의 금융권역별 비중

(단위 : %)

| 구 분 | 은행 (연금저축신탁) | 증권 (연금저축펀드) |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
|----------|----------------|----------------|------------------|------------------|
| '10. 12월 | 20.6 | 6.5 | 54.3 | 18.7 |
| '11. 12월 | 18.8 | 6.3 | 54.0 | 20.9 |
| '12. 12월 | 16.0 | 6.3 | 56.1 | 21.6 |

2. 개인연금 가입 관련 선행 연구

개인연금이 도입된 초기에는 개인연금의 정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유비용, 1993; 이기화, 1996; 김원식, 1996; 김용배, 1996). 2000년 이후에는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 개인연금을 다룬 연구(임병인·강성호, 2006; 김수완·김순옥, 2007; 이순재·김현수, 2009), 다층노후보장체계측면에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다룬 연구(전승훈·임병인, 2008; 양재환·여윤경, 2010; 김재호, 2011)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개인연금 가입결정 관련 연구

개인연금 가입결정 관련 연구로는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 문용필(2012), 백은영(2012), 이찬희·정홍주(2013), 이윤희(2012) 등이 있다.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는 한국노동패널 4-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결정요인 및 2001~2003년 기간 중 가입상태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주 및 가구특성, 소득수준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높고, 개인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인연금에 신규로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노후대비의 강조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거나, 신규 가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구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송윤아(2009)는 개인연금 가입결정 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연금 비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역선택과 상속동기로 나타났고, 주관적 기대여명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가 감소할수록, 개인연금에 가

입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2012)는 개인연금수요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4~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속성별로 개인연금의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개인연금의 유지율 문제를 고찰하였다. 평균개인연금 가입률은 2.5%에서 최대 40%로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나 90%이상의 가계가 은행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금 가입률은 낮다고 보았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취업자수와 미성년자녀수는 개인연금 가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가보유와 근로자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입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연금 가입행동과 가입금액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자가보유 여부는 가입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연금 가입과 가입금액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윤경·이남희(2012)는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60세 미만의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및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개인연금 보유자는 약 11.05%에로 낮게 나타났고, 금융자산이 적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홍보하고 강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찬희·정홍주(2013)는 인지요인, 정서요인, 금융이해력, 신뢰, 위험감수성향 등이 개인연금 가입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연금 가입자는 55.9%로 나타났고, 금융이해력은 높을수록, 인지요인에서는 장수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장수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장수관련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미가입 집단은 정서요인에서 걱정과 위험회피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선호에는 개인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집단 모두에서,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다른 노후대비 수단에 비해 개인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보험 가입여부와 가입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백은영(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23%로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개인연금 보험 가입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가 54%, 가입의향이 있는 경우가 10%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결혼여부, 노후대비수단과 공적연금 가입여부 및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이었다. 또한 개인연금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이 개인연금의 가입가능성과 가입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필(2012)은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년도를 활용하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별, 배우자유무, 베이비부머 등의 집단별로 나눠서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 집단은 고령이고, 배우자가 없을수록, 남성 집단은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액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이 없을수록, 베이비부머 집단은 근로소득액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연금 보유특성 관련 연구

개인연금 보유에 대한 연구는 주소현(2011), 주소현·정순희·최혜경(2012), 남수정(2013) 등이 있다.

주소현(2011)은 2007년 투자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연금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연금보유와 연금불입액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연금퍼즐관련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상속동기가 우리나라 연금가입에도 적용될 수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54.4%이고, 개인연금보험 및 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50.9%,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는 24.6%, 개인연금상품을 한 개의 유형 이상 가입자는 전체가입자의 9.9%,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는 전체가입자의 5.4%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상속동기가 개인연금보유 및 월 불입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개인연금보유의 가능성 증가를 위해 소비자들의 재무설계 관점을 장기적으로 갖는 필요성과 개인연금상품의 다양성 개발과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남수정(2013)은 필요노후생활비와 개인연금불입액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고 필요노후생활비와 개인연금불입액이 부동산과 금융자산 소유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국민노후보장패널1~3차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14.52%로 나타났고, 분석결과 필요노후생활비의 개인연금불입액에 대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연금불입액의 필요노후생활비에 대한 영향력은 검증을 통해 개인연금과 노후자금에 대한 동태적인 변화를 위해 종단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개인연금 가입자의 연금화 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소현·정순희·최혜경(2012)은 개인연금 가입자 474명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연금 가입자 중에서 향후 연금화를 원하는 경우는 65.5%, 일시금은 8.5%, 연금과 일시금 수령은 25.5%를 나타냈다. 연령이 높을수록 완전연금화를 희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은퇴설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모은 축적금이 노후소득조달의 자원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3) 연금퍼즐 관련 연구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헤지(hedge)하고 노후생활비의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존재하지만, 실제 개인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연금 퍼즐(annuity puzzle)”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금융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보유 자산 중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선택하지 않고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연금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진익, 2013),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연금의 가입률에 비해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금 퍼즐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Vidal & Lejárraga(2004; 주소현·정용주 재인용)는 지금까지 밝혀온 연금 퍼즐의 이유로 개인의 장수위험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공적연금이 존재하고, 연금상품의 구성이 계리적으로 볼 때 정당하지 않으며, 역선택 문제 때문에 연금상품을 개방하는 보험회사에서 가격책정을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게 하고, 자녀 및 친지 등의 가족을 장수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고려할 수 있고, 연금상품에 은퇴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출에 대한 대비를 원하며,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신연금관련 연구에서 유산상속의 동기는 많이 연구되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Yarrri(1965)에 의해 제시된 경제학적인 모델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Bernheim, 1991; Brown, 2001; Hurd, 1987; Vidal & Lejárraga, 2004; 주소현, 201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없고 유상상속의 동기가 종신연금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ernheim, 1991)와 유산상속의 동기가 종신연금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Brown, 2001; Hurd, 1987;

주소현, 2011)는 연구가 둘 다 존재했다.

Brown(2007)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연금피율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금피율의 원인을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 심리적인 변수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연금 상품에 심리적변수를 포함한 국내연구에는 주소현(2012)이 있다. 주소현(2012)은 프레이밍효과에 따른 종신연금 가입의향을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프레이밍이 부정적인 프레이밍보다 종신연금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 위험회피성향, 장수위험에 대한 염려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특성에 따른 종신연금 가입의향은 긍정적인 프레이밍이 부정적인 프레이밍보다 가입의향정도가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또한 목표지향 프레이밍의 경우 긍정적인 프레이밍이 응답자 특성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 광고의 제작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성주호·최윤호·박준범(2014)은 우리나라의 연금피율현상을 계리적 관점에서 사후분석(ex-post analysis)을 통해 연금상품설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후분석기간을 정하고, 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화 가능연령(Pensionable age)인 55세 이후 시점에서 저연령 은퇴자층(예: 55~65세)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가연금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연금화 전략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효익을 제공하여 은퇴 자산을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자산운용하는 연금피율현상이 상당부분 타당성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반대로 고연령 은퇴자층(예: 65 ~ 75세)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도가 높아 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종신연금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경향으로 연금피율현상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적 연금설계방안으로 고연령 거치옵션(Advanced-life Deferred Option)을 제공하고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선택적 투자옵션(Opt-out Investment Option)을

부여하는 방안과 거치기간 중에는 일정범위 이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옵션(Withdrawal option)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옵션(Additional contribution Option)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익(2013)은 개인연금이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현상을 연금수수께끼로 보고,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연금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개인연금의 수수료체계와 개인연금 가입 단계에서 필요한 중개(모집) 인프라 개선을 통한 거래비용 경감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거래플랫폼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3.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경제적 요인

가입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패널 자료들을 위주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주로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연금가입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뒤 연금가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임병인, 2004; 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송윤아, 2009, 문용필, 2012; 김재호, 2013). 하지만 최근에는 설문지를 통한 개인연금 가입자의 생각, 심리를 물어보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이찬희·정홍주, 2013).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배우자여부, 자녀, 교육수준, 직업, 자가보유 및 소득 등이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가입자를 비교했을 때, 남성의 가입률이 여성보다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가 많았다(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보험연구원, 2011; 이찬희, 2013). 그러나, 남성이 가입자보다 여성가입자가 많은 경우도 있었고(백은영, 2012),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연구(주소현, 2011)도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은 개인연금가입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많았다(문숙재·김연정, 1997; 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전승훈·임병인, 2008; 주소현, 2011; 이윤호, 2012). Yarri(1965)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수명이 더 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연금 상품을 더 선호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한 문숙재·김연정(1997)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이 고령층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윤호(2012)는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가계와 비근로자 가계를 비교하였는데, 비근로자 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확률은 낮아졌

다. 주소현(2011)의 연구는 개인연금 보유여부에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평균 38.8세, 개인연금 미가입가계는 37.6세이고,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30대 ~ 40대의 비율이 높은 반면 개인연금 미가입가계는 20~30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백은영(2012)은 2008년 보험소비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보험 가입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의 연금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연금보험 가입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은 근시안적 시각을 따른 것으로 보았다.

배우자의 유무는 개인연금 가입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소현, 2011; 여윤경·이남희, 2012; 백은영, 2012; 이찬희·정홍주, 2013). 여윤경·이남희(2012)은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개인연금 가입자와 전체 조사대상자를 비교하였는데, 개인연금 보유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전체 대상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주소현(2011), 이찬희·정홍주(2013)도 개인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결혼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개인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기혼인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백은영(2012)도 개인연금 보험의 가입자 중에서 85%정도가 기혼자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는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가입가능성이 높아졌다(여윤경·이남희, 2012; 김재호, 2013). 여윤경·이남희(2012)의 연구에서는 시·도·광대역이 아닌 경우에 개인연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개인연금 말고도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거나 비도시지역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아 노후준비에 대한 준비가 열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재호(2013)는 시보다 도에 거주할수록 개인연금 가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시보다 도에 거주할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개인연금 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승훈·임병인, 2008;주소현, 2011;백은영, 2012;여윤경·이남희, 2012). 전승훈·임병인(2008)은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연금 자산보유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을 한 결과 고위직·전문가 및 준전문가 집단과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백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경영, 관리, 사무직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 종사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높았고, 미가입자에는 자영업자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퇴직연금을 적용받을 수 없는 집단이고,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인 소득 흐름을 가지므로 꾸준한 소득이 보장되는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여윤경·이남희(2012)는 국민연금보장패널을 자료로 연구한 결과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경우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주소현(2011)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개인연금 가입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월평균 불입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무직, 주부보다 월평균 불입액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개인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개인연금 가입이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전승훈·임병인·김성호, 2006; 송윤아, 2009; 여윤경·이남희, 2012; 백은영, 2012; 김재호, 2013). 송윤아(2009)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요인에서 고등교육변수가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백은영(2012)도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해당되었다. 김재호(2013)의 연구에서도 교육연수가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동성 제약은 낮아지고, 금융상품에 대

한 지식이 높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므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보았다. 전승훈·임병인·김성호(2006)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 상태 변화 분석에서 가계주의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계주의 교육년수가 1년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중도 탈퇴할 가능성보다 8.2%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자가보유는 개인연금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대체로 많이 나타났다(주소현, 2011; 이운호, 2011; Capelletti et al, 2011; 이찬희·정홍주, 2013).

주소현(2011)은 개인연금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자기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연금 불입액과 관련해서는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월평균불입액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불입액이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가계에서 개인 연금을 활용한 은퇴준비가 더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가계의 경우 자가를 은퇴자금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연금 이외의 다양한 저축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운호(2012)의 연구에서는 자가보유율이 근로자가계의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자가를 마련할 때까지는 주택마련저형 저축을 촉진하고, 자가를 마련한 이후에는 개인연금저축을 촉진하게 하여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득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들이 대체로 많았고(문숙재·김연정, 1997; 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주소현, 2011; Inkamann et al, 2011; 백은영, 2012),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도 있었다(김재호, 2013). 또 개인연금 가입에 소득수준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다(이운호, 2012).

문숙재·김연정(1997)은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가 보유한 소득과 부가 많을수록 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았다. 백은영(2012), 이찬희·정홍주(2013)의 연구에서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경우에 개인연금 가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는 이항로짓을 통해 경상소득이 1만원 증가할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 대비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0.1% 높아진다고 보았다. 주소현(2011)에서는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의 총자산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을 보유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개인연금 월평균 불입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재호(2013)는 정태적 분석을 통해 경상소득이 개인연금 가입의 가능성을 낮추는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반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의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월저축액은 개인연금 가입에 가장 큰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윤호(2012)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개인연금 가입과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소득수준은 개인연금 가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에 연간근로소득이 특별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자가계의 경우 개인연금가입금액을 결정함에도 소득수준이 결정요인이 되지 못하므로 세제혜택에 대한 구분을 철폐하고 합계금액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더 많은 연금저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은퇴에 대한 기대·태도 관련 변수

개인연금의 목적은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은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며, 은퇴 후, 사망직전까지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퇴에 대한 기대나 주관적인 평가, 은퇴에 대한 태도, 은퇴재무설계 등은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Joo & Pauweles, 2002; 여윤경·정순희·문숙재, 2007; 차경옥·박미연·김연주, 2008; 정운영·백은영, 2009; 한경혜·김주현·백옥미, 2012)

Joo & Pauweles(2002)는 근로자들의 은퇴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99년 RCS(Retirement Confidence Survey)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양지수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재무적 태도와 행동을 가질수록,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은퇴준비를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은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하다고 평가한 경우는 34%,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경우는 66%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은퇴자금 총액수가 많을수록 은퇴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 연령, 부채유무, 소득수준, 부동산자산, 예상은퇴연령, 개인적 은퇴준비 충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운영·백은영(2009)은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을 위해 20~50대 중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퇴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은퇴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를 위한 매달 준비 금액이 높고, 주관적으로 은퇴준비의 충분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는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예상하는 은퇴연령은 평균 56세,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89%, 20대 보다는 30대, 미혼 보다는 기혼, 전문 관리직 종사자, 월평균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를 보유한 근로자, 현재 본인이 처한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높은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상은퇴연령이 낮을수록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증가했고,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 역시 은퇴 재무설계 수행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 경제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과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 모두 은퇴재무설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국베이비부머 패널연구 1차년도 자료(2010)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은퇴 후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재정적 준비를 더 잘하며, 은퇴 지식이 높을수록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가 높고, 재정적 부담이 낮을수록 재정적 준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후준비 관련 변수

개인연금 은 노후의 재무적 안정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개인연

금 가입여부는 재무적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선택이므로,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노후준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재무적 노후준비를 높게 하는 층은 중년기이고(박창제, 2008; 조경진·김순미, 2012),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박창제, 2008, 2011; 조경진·김순미, 2012; 이승신, 2012; 김경아, 2013)

박창제(2008)는 2007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무적 노후준비 비율은 30 ~ 50대 이르는 중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재무적 노후준비비율이 여성의 재무적 노후준비비율보다 훨씬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이 재무적 주요 노후준비유형으로 선택된 비율이 44.2%이고,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저축은 재무적 주요 노후준비유형에서 두 번째로 선택되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은 젊은층에서 선호하는 노후준비유형이고, 남성은 재무적 노후준비방법으로 공적 연금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반면, 사적 연금이나 금융저축(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을 선택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박창제(2011)는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금성 보험가입여부로 측정한 사적 재무적 노후준비 비율은 23.8%로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조경진·김순미(2012)는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를 사용하여 중년기 가계를 분석하였다.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는 가계는 49.9%이고, 노후생활비 준비는 61.6%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37.0%가 연금제도를 활용하였다. 중년기가계의 연간 가계총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비부족 경험이 없는 경우, 금

용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연간 가계 저축액이 많을수록, 경제적 독립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개인기준의 적정노후생활비를 높게 산정할수록, 인적자본 투자를 한 경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2012)은 2009년도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를 사용하여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노후생활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높았고, 노후생활비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개인연금 가입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만이 소유하고 한 가지 종류에만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후자금마련방법의 충분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와 ‘충분하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로 ‘소득이 낮아 여유가 없다’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다’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공적연금 가입된 경우, 개인연금 가입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등재된 경우, 민간건강보험 가입된 경우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2013)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차~3차 자료를 대상으로 최근 국내 중·고령층의 노후준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소득획득이 가능한 임금근로자이고 정규직일수록 공·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저축을 할 유인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개인 및 가구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공·사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소득수준, 자산축적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보유여부가 공·사적 노후준비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가입의 선택은 미래의 기대효용을 위해 현재의 효용을 나중에 미루는 선택으로 현재와 미래의 시간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벌어질 사건과 ‘나중에 언젠가’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은퇴라는 시점을 가깝게 바라보느냐, 먼 시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른 시간선호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부수현·김재휘, 2013).

Liberman & Trope(1998)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사고과정의 차이는 실제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가상적인 미래 상황을 심적으로 그려보는 것의 차이에 기인하여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을 발표하였다.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탈-맥락적(de-contextualize), 도식적(schematic), 그리고 자동적(heuristic)으로 이루어지는 고차원적 해석을 하며,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상황적 혹은 환경적 맥락에 더 의존하는 저차원적 해석에 의존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개인이 어떻게 심리적 거리를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Liberman & Trope, 2003, 2010). 따라서 개인연금 가입 의사결정과정에서 은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시점이 멀어질수록, 고차원적인 해석이 이루어져 그 대안의 본질적인(예 : 노후대비) 특징, 목표의 바람직성으로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은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저차원적인 해석이 이루어져 그 대안의 실행가능성(예 : 개인연금의 월 납입금 등)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김희연·김재휘(2013)는 연금 보험의 가입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은퇴 후 시점을 예측하는 예측 방식과 자기조절 모드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역향 예측을 실시한 경우가 순향 예측을 실시한 경우에 비해 연금 보험의 가입 의도가 높았으며, 순향 예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행동 지향적 조절 모드가 점화 된 경우 가입 의도가 높아졌고, 역

향 예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지향적 조절 모드가 점화 된 경우 가입의도가 높아졌다. 연금 보험을 가입할 때 있어서 단순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의 가입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가입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후준비 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보유 특성과 미보유 가계의 미가입 이유를 살펴본 후,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률 제고와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가계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1.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2.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관련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3.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미가입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 보유 특성은 어떠한가?

- 2-1.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가입 유형별 보유 현황은 어떠한가?
- 2-2.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가입 유형에 따라 가계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이며, 가계의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를 주로 하는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를 각각 25%씩 유의할당을 하였고, 학생과 무직은 제외하되, 주부는 포함시켰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마이크로밀엠브레인 EZ서베이에 의뢰하여 2014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종 수집된 총 531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부실 기재된 18부를 제외하고, 소득의 최상위 5%와 최하위 5%를 제외한 503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에 대한 기대·태도 관련 특성, 노후준비 관련 특성 및 개인연금 가입관련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자녀수, 교육수준, 본인직업, 본인의 고용형태, 배우자직업, 배우자의 고용형태,

거주 지역, 자가보유 여부, 월평균 가계 소득을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재학 이상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직업의 경우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표'에 준하여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자영업자,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기술직, 기타로 나누고, 기타에는 주부도 포함시켰으며, 자신 또는 배우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기타(시 당위 중소도시, 군/면/읍)으로 구분하였고, 월평균 가계 소득은 가계를 기준으로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연간 총소득을 합한 뒤, 12로 나눈 액수를 기입하게 하였다.

2) 은퇴에 대한 기대 관련 특성

개인연금의 가입은 은퇴 이후의 삶과 관련되어 있으며, 은퇴 관련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예상은퇴연령, 예상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은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은퇴 후 예상하는 생활비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몇 %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은퇴에 대한 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8문항을 측정하였다. 은퇴에 대한 태도의 문항은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가 김영대(2004), 배문조·진귀연(2004), 지연경·조병은(1991), 최성재(1989), Staples(1998)의 척도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제시하였고, 문항에 대한 총합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하였다.

<표7> 은퇴태도 측정문항

| 변수 | 측정문항 | Cronbach' a |
|----------------------|-----------------------------|-------------|
| 은퇴 태도 |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싶다. | .756 |
| | 은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 | 노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 |
| | 노후의 삶은 전반적으로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 |
| | 노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 |
| | 노후에는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 |
| | 노후에는 자녀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 쉽다 | |
| 노후에는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기 쉽다. | | |

3) 노후준비 관련 특성

개인연금의 가입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노후준비 관련된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현재 경제수준과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노후준비방법과 노후준비금액의 충분성을 조사하였다.

현재 경제수준과 은퇴 후 예상하는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는 1 ~ 10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10점에 가까울수록 인지하는 경제수준이 높은 것이고 1점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이다.

노후준비방법과 노후준비금액의 충분성은 현재 하고 있는 노후준비 방법과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1점 일 경우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부터 5점일 경우 '매우

충분하다'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3)개인연금 가입 관련 특성

개인연금 가입 특성은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을 조사하였다. 개인연금 가입여부는 본인과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개인연금 상품을 조사하였고,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인연금 가입가계로 분류하였다.

개인연금 가입유형은 크게 세제 적격 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생명·손해보험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하였다.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의 일반연금과 실적배당형상품인 변액연금, 자산연계형연금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가 개인연금 가입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8>과 같이 각 개인연금 상품의 정의를 보여주고, 본인과 배우자가 가입한 상품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8>개인연금 가입 상품 측정문항

| 구분 | | 상품 정의 |
|------|-----------------------|--|
| 연금저축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은 <u>소득공제</u> , 연금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u>은행</u> , <u>자산운용사</u> , <u>생명보험</u> , <u>손해보험사</u> , <u>우체국</u> 등을 통해 가입합니다. |
| | 연금저축펀드 | |
| | 연금저축보험 | |
| 연금보험 | 일반연금 (금리확정형,금리연동형) | 연금보험은 <u>소득공제</u> 혜택은 없고, <u>10년 이상 유지 시</u> 보험차익 <u>비과세</u> 되는 상품으로, <u>생명보험사</u> 에서만 판매합니다. |
| | 변액연금, 자산연계형 연금 | |

개인연금 가입자가 여러 개의 상품에 연간 가입했을 경우에는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택한 개인연금 상품 각각에 대해 연간 납입액과 가입기간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들(주소현, 2011, 2012; 이경우, 2013)과 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13; 보험소비자조사, 2014)의 결과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1위부터 3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4. 분석방법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노후관련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 간 평균비교(t-test)와 교차분석(X^2 -test)를 실시하였고, 개인연금 가입유형에 따른 가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 간 평균비교(ANOVA)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모델의 로그오즈함수(log odds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x) = \log \frac{\pi}{1-\pi}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여기에서 π 는 개인연금가입이 일어날 확률이고 x_i ($i=1$ 부터 k)는 사회·경제적 특성, 노후준비관련 특성을 포함하는 독립변수이며, β 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된 로그오즈계수(log odds coefficient)이다.

분석은 SPSS18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1)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n=503)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여부, 자녀수, 교육수준, 직업, 고용형태, 거주지역, 자가보유 여부, 월평균가계 소득으로 나뉘어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결과는 <표9>에서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256명(50.9%), 여자는 247명(49.1%)이고, 각 연령대 별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20대는 91명(18.1%), 30대는 139명(27.6%), 40대는 139명(27.6%), 50대는 134명(26.6%)이며, 평균연령은 40.67세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99명(65%)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76명(35%)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299명이었고, 이 중 183명(61.2%)는 자녀가 2명이었으며, 자녀수는 평균 1.73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 265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는 44명(8.7%)으로 가장 적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339명(83.5%), 비정규직은 67명(16.5%)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과 기타지역(중소도시, 도 단위 군/면/읍)이 각각 약37%이고, 6대광역시가 27%로 나타났다. 자가를 소유한 경우가 329명(65.4%)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평균 444.53만원으로 조사시점인 2014년 2분기 전국 가계의 소득 평균 415.2만원(가계동향조사, 통계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9〉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n=503)

| 인구특성 | 구분 | 빈도 (%) 또는 평균 |
|-------------------------|----------------|-----------------|
| 성별 | 남 | 256(50.9) |
| | 여 | 247(49.1) |
| 연령대 | 20대 | 91(18.1) |
| | 30대 | 139(27.6) |
| | 40대 | 139(27.6) |
| | 50대 | 134(26.6) |
| | 평균(세) | 40.67 |
| 배우자여부 | 없다 | 176(35.0) |
| | 있다 | 327(65.0) |
| 자녀 수 (n=299) | 1명 | 99(33.1) |
| | 2명 | 183(61.2) |
| | 3명 | 15(5.0) |
| | 4명 | 2(0.7) |
| | 평균(명) | 1.73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이하 | 100(19.9) |
| |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 348(69.2) |
| | 대학원재학 이상 | 55(10.9) |
| 직업 | 자영업자 | 44(8.7) |
| | 전문·관리직 | 60(11.9) |
| | 사무직 | 265(52.7) |
| | 서비스·판매·기술직 | 80(15.9) |
| | 기타(주부포함) | 54(10.7) |
| 고용형태 (n=406) | 정규직 | 339(83.5) |
| | 비정규직 | 67(16.5) |
| 배우자 직업 (n=327) | 자영업자 | 40(12.2) |
| | 전문·관리직 | 43(13.1) |
| | 사무직 | 118(36.1) |
| | 서비스·판매·기술직 | 59(18.0) |
| | 기타(주부포함) | 67(20.5) |
| 고용형태 (n=220) | 정규직 | 178(80.9) |
| | 비정규직 | 42(19.1) |
| 거주 지역 | 서울 | 185(36.8) |
| | 6대 광역시 | 136(27.0) |
| | 기타 | 182(36.2) |
| 자가 보유 | 있다 | 329(65.4) |
| | 없다 | 174(34.6) |
|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평균(표준편차)) | | 444.53(214.123)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2) 노후준비와 은퇴에 대한 기대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 관련 특성으로 은퇴예상연령, 현재와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은퇴준비 충분성, 은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은퇴예상연령은 평균 60.26세로 나타났고, 현재연령을 고려하여 예상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본 결과 평균 19.59년이었다.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재 경제수준을 1~10점으로 질문한 결과, 4.94점이었고, 은퇴 이후 예상하는 경제수준은 평균 4.69점으로 현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현재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하는 생활비 비중은 67.54%로 나타났다. 보통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한 달 생활비는 현재생활비의 70% 정도로 예상하고(차경욱·박미연·김연주, 2008), 통계청(2013)조사에서도, 고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의 68.6%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조사대상자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방법과 금액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노후준비방법은 '충분하다'가 37명(7.4%), '보통이다'가 173명(34.4%), '충분하지 않다'가 293명(58.3%)으로 조사되었고, 노후준비금액은 '충분하다'는 37명(7.4%), '보통이다'는 148명(29.4%), '충분하지 않다'는 318명(63.2%)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정도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점 리커트 척도 8문항으로 측정된 은퇴에 대한 태도는 평균 23.89 정도이고, 5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은 2.98로, 은퇴에 대한 태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10>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와 은퇴 기대 관련 특성 (n=503)

| 구 분 | | | 평균(표준편차)/ 빈도(%) | |
|----------|--------------------|-------------------------------------|-----------------|-------------------------|
| 노후 준비 |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 은퇴 후 | 4.69(1.79) | |
| | | 현재 | 4.94(1.60) | |
| |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지 | 방법 | 충분하다 | 37(7.4) |
| | | | 보통이다 | 173(34.4) |
| | | | 충분하지 않다 | 293(58.3) |
| | | | 평균 | 2.35(.82) ¹⁾ |
| | | 금액 | 충분하다 | 37(7.4) |
| | | | 보통이다 | 148(29.4) |
| | | | 충분하지 않다 | 318(63.2) |
| | | | 평균 | 2.26(.84) ²⁾ |
| 은퇴 기대 | 은퇴에 대한 기대 | 은퇴 예상 연령 | 60.26(5.71) | |
| | | 예상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 | 19.59(9.73) | |
| | | 은퇴 후 예상 생활비 (현재 생활비 대비) | 67.54(19.78) | |
| | 은퇴태도 | 23.89(4.52) [2.98] ³⁾ | | |

1) 5점 환산 평균

2) 5점 환산 평균

3) 5점 환산 평균

2. 개인연금 가입 여부에 따른 가계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가계특성을 비교하였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 가입가계로 분류했다.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비율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이운호, 2012; 여윤경·이남희, 2012; 백은영, 201; 남수정, 2013 등)보다는 다소 높았는데, 이는 일부패널 자료들이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자료를 통한 선행연구(주소현, 2011; 이찬희·정홍주, 2013; 보험소비자조사, 2014 등)들은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50%대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278가계(55.3%)이고, 개인연금 미가입가계는 225가계(44.7%)로 나타났다.

1)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개인연금 가입가계와 미가입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분석결과,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직업, 고용형태, 배우자 직업, 배우자 고용형태, 자가보유 여부,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을 비교한 결과,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41.44세로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39.73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주소현(2011), 김재호(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평균연령이 미가입가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이찬희·정홍주(2013), 보험연구원(2011)의 연구에서도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40대의 비중이 높고, 미가입가계는 3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배우자의 유무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계의 개인연금 가입 비율

(71.6%)이 배우자 없는 가계(56.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수준은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방향성을 보여준다(전병훈·임병인·김성호, 2006; 송윤아, 2009; 여윤경·이남희, 2012; 백은영, 2012; 김재호, 2013). 고졸의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계 비율(16.2%)이 미가입가계(24.4%) 보다 낮았고,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는 가입가계의 비율이(13.7%)이 미가입가계(7.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은 자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비율이 미가입가계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기술직, 기타에서는 미가입가계의 비율이 가입가계보다 높았다. 또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직업 안정성이 개인연금 가입확률을 높인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전승훈·임병인, 2008; 주소현, 2011; 백은영, 2012; 여윤경·이남희, 2012). 개인연금 가입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집단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 자영업자는 개인연금 가입가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은 퇴직연금이라는 2층 보장체계가 없기 때문에 노후보장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안이 적고, 소득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미가입가계보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가를 보유한 가계일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연금 가입에 자가보유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주소현, 2011; 이윤호, 2011; 이찬희·정홍주, 2013).

또한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월평균소득이 489.41만원인 반면에 미가입가계

의 평균은 389.08만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며,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보유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문숙재·김연정, 1997; 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주소현, 2011 외).

<표1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여부 차이 검증 (n=503)

| 변수 | 구분 | 개인연금 가입가계 (n=278) | 개인연금 미가입가계 (n=225) | t/ χ^2 |
|-------------------------|---|--|---|-------------|
| 성별 | 남 여 | 143(51.4) 135(48.6) | 113(50.2) 112(49.8) | .07 |
| 연령 | 평균(세) | 41.44 | 39.73 | 1.95* |
| 배우자 유무 | 없다 있다 | 79(28.4) 199(71.6) | 97(43.1) 128(56.9) | 11.80*** |
| 자녀 수 (n=329) | 평균(명) | 1.73 | 1.74 | -.27 |
| 교육 수준 |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재학 이상 | 45(16.2) 195(70.1) 38(13.7) | 55(24.4) 153(68.0) 17(7.6) | 8.60** |
| 직업 | 자영업자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기술직 기타(주부포함) | 28(10.1) 38(13.7) 155(55.8) 30(10.8) 27(9.7) | 16(7.1) 22(9.8) 110(48.9) 50(22.2) 27(12.0) | 14.76** |
| 고용형태 (n=406) | 정규직 비정규직 | 198(88.8) 25(11.2) | 141(77.0) 42(23.0) | 10.05*** |
| 배우자 직업 (n=327) | 자영업자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기술직 기타(주부포함) | 24(12.0) 31(15.5) 75(37.5) 32(16.0) 38(19.0) | 16(12.6) 12(9.4) 43(33.9) 27(21.3) 29(22.8) | 4.22 |
| 고용형태 (n=220) | 정규직 비정규직 | 120(87.0) 18(13.0) | 58(70.7) 24(29.3) | 8.77** |
| 거주 지역 |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기타 | 108(38.8) 75(27.0) 95(34.2) | 77(34.2) 61(27.1) 87(38.7) | 1.42 |
| 자가 보유 | 있다 없다 | 209(75.2) 69(24.8) | 120(53.3) 105(46.7) | 26.23*** |
| 월평균 소득(만원) (평균(S.D)) | | 489.41(220.02) | 389.08(193.12) | 5.44***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p<.05, **p<.01, ***p<.001

2)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노후준비와 은퇴기대 관련 특성 비교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노후준비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12>와 같이 나타났다. 예상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현재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비중, 노후준비방법과 노후준비금액에 대한 충분성, 은퇴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은퇴예상연령은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상은퇴 시점까지 남은기간은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평균 18.64년, 개인연금 미가입가계가 20.76년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예상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즉 연령이 많거나, 은퇴 예상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현재 경제수준과 은퇴 후 예상하는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비교한 결과,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미가입가계에 비해 현재 경제수준과 은퇴 후 예상하는 경제수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현재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비중은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66.04%인 것에 비해 개인연금 미가입가계가 69.39%로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소득수준 대비 은퇴 후 예상하는 생활비를 계산하면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약323만원, 개인연금 미가입가계는 약 268만원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경우 현재소득수준대비 은퇴 후 생활비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필요로 하는 생활비 금액은 개인연금 가입가계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개인연금 미가입가계가 노후준비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만,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노후준비방법과 노후준비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1~5점) 질문한 결과, 방법과 금액 충분성 모두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점수가 미가입가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미가입가계보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노후준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연금 가입가계도 노후준비방법 충분성은 2.53, 노후준비금액 충분성은 2.46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미가입가계에 비해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여윤경·정순희·문숙재, 2007, 정운영·백은영, 2009, 한경혜·김주현·백옥미, 2012 등)와 유사한 결과로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재정적 준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적 준비를 충분하게 한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연구(Lee & Law, 2004, 한경혜·김주현·백옥미, 2012)도 있다.

<표12>노후준비 특성과 은퇴기대 특성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여부 차이검증

(n=503)

| 변수 | | 개인연금 가입가계 (n=278) | 개인연금 미가입가계 (n=225) | t-test | |
|------------------|------------------------------|------------------------------------|--------------------------|------------------|---------|
| 노 후 준 비 |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1~10점) | 은퇴 후 | 5.02(1.73) | 4.29(1.73) | 4.62*** |
| | | 현재 | 5.26(1.56) | 4.56(1.57) | 4.98*** |
| |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 충분성(1~5점) | 방법 | 2.53(0.809) | 2.12(0.798) | 5.62*** |
| | | 금액 | 2.46(0.822) | 2.01(0.815) | 6.04*** |
| 은 퇴 기 대 | 은퇴에 대한 기대 | 은퇴 예상 연령 (세) | 60.08(5.71) | 60.50(5.72) | -0.82 |
| | | 예상 은퇴 시점 까지 남은 기간 (년) | 18.64(9.58) | 20.76(9.81) | -2.45** |
| | | 은퇴 후 예상 생활비(% (현재 생활비 대비) | 66.04 (18.91) | 69.39 (20.70) | -1.89* |
| | 은퇴 태도 ¹⁾ | 24.40(4.53) [3.05] | 23.26(4.44) [2.90] | 2.83** | |

1) [] 안은 5점 환산 평균값

*p<.05, **p<.01, ***p<.001

3) 미가입가계의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개인연금 미가입자 225명에게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우, 조사자가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정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먼저, 1순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연금 납입금이 부담 된다’는 의견이 107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연금상품에 대해 잘 몰라서’가 67명(29.8%)으로 조사됐다. 2순위는 ‘개인연금 납입금이 부담되기 때문’이 61명(27.1%), ‘수수료 높고, 해지의 어려움과 상품이 복잡해서’가 56명(27.9%)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순위는 ‘수수료 높고, 해지의 어려움과 상품이 복잡해서’가 59명(26.2%), ‘연금보다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것을 선호’가 44명(19.6%),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명(14.7%)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와 ‘연금보다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것을 선호’가 많이 나타났다. 연금선택여부와 관련 있는 유산상속의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중에 거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

종합해서 보면,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개인연금 납입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다.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특성분석에서 보면 개인연금 가입자에 비해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거의 100만원 정도 적게 나타나고, 안정적인 직업유형 보다는 불안정한 직업인 경우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계동향(2014)에서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15만 2천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월평균소득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연금 미가입자들이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

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높은 수수료, 해지의 어려움, 상품의 복잡성 등 개인연금 상품의 구조적 문제이다. 개인연금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가입 후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높아 원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어렵고, 사업비의 선취구조로 인해 수수료가 높다는 문제점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개인연금활성화 방안(2008, 2011, 2013)을 통해 개선방안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다. 연금퍼즐에 관한 선행연구(진익, 2013)에서도 수수료체계와 중개인프라 개선을 통한 거래비용 경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인연금 상품의 구조적 특성은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연금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다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것을 선호해서’라는 이유도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경우(2013)의 연구에서 낮은 이자율과 유동성부족이 연금수요를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연금퍼즐 관련 선행연구(Bernheim, 1991; Vidal & Lejarraga, 2004)에서 연금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상속동기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매우 낮아,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주소현(2011)의 연구와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미가입자에게 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225명 중 121명(53.8%)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104명(46.2%)은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연금 미가입가계를 대상으로 가입의향에 따른 가계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으나,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13>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미가입 이유 (n=225)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내용 | 빈도 (%) | 내용 | 빈도 (%) | 내용 | 빈도 (%) |
| 개인연금 납입금이 부담되기 때문 | 107 (47.6) | 개인연금 납입금이 부담되기 때문 | 61 (27.1) | 수수료 높고, 해지의 어려움과 상품이 복잡해서 | 59 (26.2) |
| 개인연금상품에 대해 잘 몰라서 | 67 (29.8) | 수수료 높고, 해지의 어려움과 상품이 복잡해서 | 56 (24.9) | 연금 보다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것 선호 | 44 (19.6) |
|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하기 때문에 | 18 (8.0) | 개인연금상품에 대해 잘 몰라서 | 32 (14.2) | 개인연금상품에 대해 잘 몰라서 | 33 (14.7) |
| 수수료 높고, 해지의 어려움과 상품이 복잡해서 | 13 (5.8) | 연금 보다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것 선호 | 32 (14.2) |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하기 때문에 | 30 (13.3) |
| 연금 보다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것 선호 | 13 (5.8) |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31 (13.8) | 일찍 사망하면 연금이 손해일 것 같아서 | 29 (12.9) |
| 기타 | 2 (2.2) | 일찍 사망하면 연금이 손해일 것 같아서 | 9 (4.0) | 개인연금 납입금이 부담되기 때문 | 19 (8.4) |
| 일찍 사망하면 연금이 손해일 것 같아서 | 2 (0.9) |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어서 | 3 (1.3) |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어서 | 6 (2.7) |
|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어서 | 0 (0) | 기타 | 1 (0.4) | 기타 | 5 (2.2) |

<표14>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가입의향 (n=225)

| 구 분 | | 빈도(%) |
|-----------|----|-----------|
| 개인연금 가입의향 | 있다 | 121(53.8) |
| | 없다 | 104(46.2) |

3.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특성

1)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현황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계의 연금보유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과 개수를 파악하였고, 가입한 개인연금의 평균 가입기간과 평균 연간 납입액을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연금보유 현황은 연금저축(세제 적격),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상품별, 가입자 명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 연금저축(세제 적격)과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에 둘 다 가입한 경우는 중복가입은 별도 분류하였다(<표15>).

개인연금에 가입한 278가계 중, 연금저축(세제 적격)에 가입한 가계는 228가계이고, 이 중에서 연금저축신탁은 46가계, 연금저축펀드는 39가계, 연금저축보험은 185가계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가계가 가장 많았다.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에 가입한 104가계 중, 일반연금은 55가계, 변액·자산연계형 연금은 55가계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에 가입한 가구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가계가 더 많았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상품별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가계가 가장 많았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는 54가계로 나타났다. 상품의 가입개수를 살펴보면, 1개는 128가계, 2개는 109가계, 3개는 27가계, 4개는 10가계, 5개는 1가계, 6개는 3가계로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한 가계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78명이었는데, 이 중 연금저축(세제 적격)에 가입한 사람은 222명이었고, 연금저축신탁은 41명, 연금저축펀드는 35명, 연금저축보험은 176명으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금보험(세제 적격)에 본

인명의로 가입한 조사대상자는 95명이었고, 일반연금보험은 49명, 변액·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50명으로 나타났다. 본인명의로 연금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은 39명이고, 가입한 상품개수를 살펴보면, 1개는 213명, 2개는 58명, 3개는 6명, 4개는 1명으로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65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121명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세제 적격)에 가입한 조사대상자는 90명으로 이 중에서 연금저축신탁은 19명, 연금저축펀드는 13명, 연금저축보험은 67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로 연금보험(세제 적격)에 가입한 경우는 39명으로, 이 중에서 일반연금보험은 25명, 변액·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15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중복가입한 경우는 8명이고, 연금상품에 1개만 가입한 사람은 106명, 2개 가입한 사람은 12명 3개는 3명으로 나타났다.

가계단위로 살펴보면, 연금저축(세제 적격)에 가입한 수가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에 가입한 수의 약 2배가 많게 나타났고, 상품 중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수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율을 증가시키고자 한 유인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행연구(이순재·김현수, 2009; 주소현, 2011)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15>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상태

| 구 분 | 개인연금 가입가계 (n=278) | 본인명의 (n=278) | 배우자 (n=121) |
|--------------|-------------------------|-----------------|----------------|
| 연금저축(세제 적격) | 228 | 222 | 90 |
| 연금저축신탁 | 46 | 41 | 19 |
| 연금저축펀드 | 39 | 35 | 13 |
| 연금저축보험 | 185 | 176 | 67 |
|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 104 | 95 | 39 |
| 일반연금 | 55 | 49 | 25 |
| 변액·자산연계형연금 | 55 | 50 | 15 |
| 중복가입 | 54 | 39 | 8 |
| 평균 가입개수 | 1.76 | 1.26 | 0.50 |
| 가입개수 | | | |
| 1개 | 128 | 213 | 106 |
| 2개 | 109 | 58 | 12 |
| 3개 | 27 | 6 | 3 |
| 4개 | 10 | 1 | 0 |
| 5개 | 1 | 0 | 0 |
| 6개 | 3 | 0 | 0 |

연금저축(세제 적격)과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의 상품별로 가입기간과 연간 납입액을 분석한 결과는 <표16>와 같이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평균가입기간은 8.62년이고 연간 평균 납입액은 231.05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세제 적격) 가입가계(n=278)의 평균 가입기간은 8.54년이고, 연간 평균 납입액은 277.8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연금저축(세제 적격)의 상품별 보유가계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신탁 보유가계(n=46)의 평균 가입기간은 8.90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239.64만원, 연금저축펀드 보유가계(n=39)의 평균 가입기간은 5.18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243.18만원, 연금저축보험 보유가계(n=185)의 평균 가입기간은 8.32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231.59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2014)의 조사에서 연금 저축 상품의 계약유지율이 5년 시점에 약 72.4%, 10년 시점에서 52.4%로 장기보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조사의 연금저축 평균 가입기간은 약 8.54년으로 다소 길게 나타났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평균 납입액은 277.86만원으로 주소현(2011)의 315.60만원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경희(2011)의 220만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400만원보다는 약 122만원 적은 수준이다.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가입가계(n=104)를 살펴보면, 연금보험 가입가계의 평균 가입기간은 8.63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314.57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보험 상품별 보유가계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일반연금보험 보유가계(n=55)의 평균가입기간은 10.62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251.58만원이고, 변액·자산연계연금보험 보유가계(n=55)의 평균가입기간은 6.78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597.4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 상품 중 일반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평균 가입기간이 10.62년으로 연금보험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은 연금저축(세제 적격)보다 연간 평균 납입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16>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 상품별 보유기간과 납입액

| 구 분 | 개인연금 가입가계 (n=278) | 연금저축(n=228) | | | | 연금보험(n=104) | | |
|------------------------|-------------------------|--------------------|----------------------|----------------------|-----------------------|---------------------|----------------------|-------------------------------|
| | | 전체 | 연금저축 신탁 (n=46) | 연금저축 펀드 (n=39) | 연금저축 보험 (n=185) | 전체 | 일반 연금보험 (n=55) | 변액· 자산연계 연금보험 (n=55) |
| 평균 가입 기간 (S. D) | 8.62 (7.42) | 8.54 (6.72) | 8.90 (6.87) | 5.18 (3.43) | 8.32 (5.96) | 8.63 (6.73) | 10.62 (8.01) | 6.78 (3.95) |
| 연간 평균 납입액 (S. D) | 231.05 (413.44) | 277.86 (441.98) | 239.64 (460.63) | 243.18 (337.08) | 231.59 (337.36) | 314.57 (1101.61) | 251.58 (415.76) | 297.41 (732.28) |

2) 개인연금 가입유형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상품에 따라 가계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금저축(세제 적격) 가입가계(n=174), 연금 보험(세제 비적격) 가입가계(n=50), 중복가입가계(n=54)로 나누어 사회·경제적 비교와 노후 관련 특성을 비교하였다.

개인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 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고용형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7>). 연금저축 가입가계의 경우 연금보험, 중복가입가계에 정규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다른 상품에 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은 연금저축에 따르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17> 사회·경제적 특성 따른 개인연금 가입유형 차이 검증 (n=278)

| 변수 | 구분 | 연금저축 (n=174) | 연금보험 (n=50) | 중복가입 (n=54) | F/ χ^2 |
|--------------------------|------------|-----------------|----------------|----------------|-------------|
| 성별 | 남 | 94(54.0) | 25(50.0) | 24(44.4) | 1.56 |
| | 여 | 80(46.0) | 25(50.0) | 30(55.6) | |
| 연령 | 20대 | 28(16.1) | 11(22.0) | 5(9.3) | 6.41 |
| | 30대 | 45(25.9) | 12(24.0) | 15(27.8) | |
| | 40대 | 51(29.3) | 19(38.0) | 19(35.2) | |
| | 50대 | 50(28.7) | 8(16.0) | 15(27.8) | |
| | 평균(세) | 41.72(9.67) | 39.38(9.35) | 42.41(9.44) | 1.51 |
| 배우자 유무 | 없다 | 48(27.6) | 19(38.0) | 12(22.2) | 3.34 |
| | 있다 | 126(72.4) | 31(62.0) | 42(77.8) | |
| 자녀 수 | 평균(명) | 1.66(.57) | 1.86(.65) | 1.84(.43) | 2.49 |
| 교육 수준 | 고등학교 졸업이하 | 21(12.1) | 12(24.0) | 12(22.2) | 8.60 |
| | 대학교 졸업 | 124(71.3) | 35(70.0) | 36(66.7) | |
| | 대학원재학 이상 | 29(16.7) | 3(6.0) | 6(11.1) | |
| 직업 | 자영업자 | 17(9.8) | 6(12.0) | 5(9.3) | 5.76 |
| | 전문·관리직 | 27(15.5) | 5(10.0) | 6(11.1) | |
| | 사무직 | 100(57.5) | 27(54.0) | 28(51.9) | |
| | 서비스·판매·기술직 | 14(8.0) | 8(16.0) | 8(14.8) | |
| | 기타(주부포함) | 16(9.2) | 4(8.0) | 7(13.0) | |
| 고용 형태 | 정규직 | 130(92.2) | 35(87.5) | 33(78.6) | 6.12* |
| | 비정규직 | 11(7.8) | 5(12.5) | 9(21.4) | |
| 배우자 직업 | 자영업자 | 12(9.4) | 7(22.6) | 5(11.9) | 6.16 |
| | 전문·관리직 | 22(17.3) | 2(6.5) | 7(16.7) | |
| | 사무직 | 49(38.6) | 10(32.3) | 16(38.1) | |
| | 서비스·판매·기술직 | 21(16.5) | 5(16.1) | 6(14.3) | |
| | 기타(주부포함) | 23(18.1) | 7(22.6) | 8(19.0) | |
| 고용 형태 | 정규직 | 80(87.9) | 14(82.4) | 26(86.7) | 0.39 |
| | 비정규직 | 11(12.1) | 3(17.6) | 4(13.3) | |
| 거주 지역 | 서울특별시 | 72(41.4) | 20(40.0) | 16(29.6) | 4.07 |
| | 6대광역시 | 41(23.6) | 15(30.0) | 19(35.2) | |
| | 기타 | 61(35.1) | 15(30.0) | 19(35.2) | |
| 자가 보유 | 없다 | 40(23.0) | 16(32.0) | 13(24.1) | 1.71 |
| | 있다 | 134(77.0) | 34(68.0) | 41(75.9) | |
| 월평균소득규모(만원) (평균(S.D)) | | 496.64(213.26) | 442.20(254.52) | 509.81(204.85) | 1.48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p<.05, **p<.01, ***p<.001

개인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노후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도 은퇴에 대한 태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8>).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가계와 연금저축, 연금보험에 중복 가입한 가계의 은퇴태도가 연금보험 가입가계의 은퇴태도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에 가입한 가계와 중복 가입한 가계의 노후준비에 대한 충분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은퇴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재무준비를 더 잘하고, 재무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정운영·백은영, 2009; 한경혜·김주현·백옥미, 2012; 조정진·김순미, 2012; 김경아, 2013), 중복가입자 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해 노후준비에 대한 충분성도 높게 인식하였고, 은퇴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서 개인연금 보유여부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은퇴에 대한 기대와 노후준비관련 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 가계만을 대상으로 가입 유형에 따른 가계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많이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개인연금 상품의 구조나 특성이 가계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 되어 있지 못하고,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연금 상품별 특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표18> 노후준비특성과 은퇴기대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유형 차이검증

(n=278)

| 변수 | | 연금저축 (n=174) | 연금보험 (n=50) | 중복가입 (n=54) | F/ X ² | |
|------------------|---|-------------------------------|------------------|------------------|-------------------|-------|
| 노 후 준 비 |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1~10점) | 은퇴 후 | 5.03 (1.68) | 4.76 (1.62) | 5.20 (1.98) | 0.87 |
| | | 현재 | 5.28 (1.56) | 4.90 (1.43) | 5.50 (1.64) | 0.14 |
| | 노후 준비에 대한 충분성 (1~5점) | 방법 | 2.49 | 2.42 | 2.76 | 2.89* |
| | | | ab | a | b | |
| | | 금액 | 2.45 | 2.26 | 2.65 | 2.94* |
| | | | ab | a | b | |
| 은 퇴 기 대 | 은퇴에 대한 기대 | 은퇴 예상 연령(세) | 60.21 (5.55) | 59.86 (5.95) | 59.85 (6.09) | 0.12 |
| | | 예상 은퇴 시점 까지 남은기간(년) | 18.48 (9.66) | 20.48 (9.14) | 17.44 (9.64) | 1.37 |
| | | 은퇴 후 예상 생활비 (현재 생활비 대비)(%) | 65.60 (19.03) | 66.10 (21.05) | 67.41 (16.53) | 0.19 |
| | 은퇴 태도 ¹⁾ | 24.72 (4.78) | 23.00 (4.33) | 24.64 (3.60) | 2.97* | |
| | | b | a | b | | |

1)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임.

[] 안은 5점 환산 평균값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사후분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음.

*p<.05, **p<.01, ***p<.001

4.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연금 가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 선택한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표19>에 제시하였다. 로그오즈계수(log odds coefficients)는 오즈비(odds ratios)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오즈비는 독립변수들이 개인연금 가입결정의 오즈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나타내며, 1보다 크면 오즈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오즈를 감소시킨다. 오즈비에서 1을 빼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독립변수가 1단위 변할 때 오즈의 변화량 증감분을 퍼센트로 알 수 있다(DeMaris, 1992; Pampel, 2000).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직업, 자가보유여부가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가계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고졸보다는 대학원 이상일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송윤아, 2009; 여윤경·이남희, 2012; 백은영, 2012; 김재호, 2013)와 같은 방향성을 나타냈다.

비정규직보다는 자영업자 가계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1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 보다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인연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이 노후 소득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규모가 보장이 되어야하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개인연금 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건식(2012)의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이 기업차원의 노후보장수단과 공

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서 상당부분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근로소득이 상당히 낮아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 절대적 빈곤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사적노후소득보장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노후소득의 부족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들이 사적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를 보유한 가계가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가계보다 개인연금 납입금을 낼 수 있는 여유자금에 있을 가능성이 커서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소현(2011)의 연구에서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월평균 개인연금 불입액이 낮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 개인연금을 활용한 은퇴준비를 더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본 반면, 이윤호(2012)는 근로자 가구는 자가보유율이 개인연금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비근로자 가구는 자가보유 여부가 가입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노후준비 관련 특성 중에서는 노후준비방법과 금액에 대한 충분성(1~10점) 변수가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가계의 노후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한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로지스틱 분석 -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n=503)

| 독립변수(괄호 안은 준거 집단) | | coefficient(s.e) | | odds ratio |
|-------------------|--------------------------------|------------------|--------|------------|
| 사회 경제적 변수 | 연령 | .000 | (.013) | 1.000 |
| | 성별(남자) 여자 | .407 | (.219) | 1.503 |
| | 교육수준(고졸) 대졸(2년제 포함) | .391 | (.258) | 1.478 |
| | 대학원 졸 이상 | .899* | (.409) | 2.458 |
| | 직업(비정규직) 정규직 | .548* | (.251) | 1.729 |
| | 자영업 | .863* | (.410) | 2.369 |
| | 배우자 유무 (없음) 있음 | .552* | (.267) | 1.737 |
| | 자가보유(없음) 있음 | .593** | (.221) | 1.810 |
| | 거주지(기타) 서울·광역시 | .243 | (.204) | 1.275 |
| 월평균 가계 소득 | .001 | (.001) | 1.001 | |
| 노후 준비 변수 | 노후 준비 정도 | .251** | (.079) | 1.285 |
| | 현재 생활비 대비 은퇴 후 생활비 비중 | -.005 | (.005) | .995 |
| 은퇴 기대 변수 |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 .076 | (.073) | 1.079 |
| | 은퇴에 대한 태도 | -.019 | (.025) | .981 |
| 상수 | | -2.727** | (.879) | .065 |
| chi-square | | | | 79.97*** |
| -2log likelihood | | | | 611.74 |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에 따라 가계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특성과 미가입가계의 미가입 이유를 파악하였으며,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를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가계와 미가입가계로 분류한 결과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278명(55.3%)이고, 미가입가계는 225명(44.7%)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가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수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직업, 고용형태, 배우자 고용형태, 자가보유 여부, 월평균 가계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노후준비 관련 특성의 변수는 예상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현재 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하는 생활비 비중, 노후준비 정도, 은퇴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개인연금 미가입가계 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으며, 본인은 안정적인 직업인 경우가 많고, 배우자는 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많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미가입가계보다 예상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짧고, 현재 경제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이 높으며, 현재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비중은 낮지만 실제 비용은 높고, 노후준비 방법과 금액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은퇴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에 대해 미가입 이유와 가입의향을 파악한 결과, 미가입 이유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개인연금 납입금이 부담된다’이고, 두번째로 높은 비율은 ‘수수료 높고, 해지의 어려움과 상품이 복잡해서’, 세번째 높은 비율은 ‘다른 방법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와 ‘연금보다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것을 선호해서’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연금 미가입가계(n=225)를 대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121명(53.8%)은 가입할 의향이 있고, 104명(46.2%)은 가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연금보유 상태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한 연금상품과 가입한 상품의 개수와 가입한 개인연금의 평균 가입기간과 평균 연간 납입액을 분석하였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278가계 중 연금저축(세제 적격)상품에 가입한 가계는 228가계(연금저축신탁 46가계, 연금저축펀드 39가계, 연금저축보험 185가계)이고,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상품에 가입한 가계는 104가계(일반연금보험 55가계, 변액·자산연계형연금보험 55가계)로 나타났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가계가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가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평균 가입기간은 8.62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231.05만원으로 나타났고, 연금저축(세제 적격)의 평균 가입기간은 8.54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277.86만원이고,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의 평균 가입기간은 8.63년, 연간 평균 납입액은 314.57만원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연금에 가입가계를 가입유형에 따라 가계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금저축(세제 적격) 가입가계(n=174),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가입가계(n=50), 중복가입가계(n=54)로 나누어 사회·경제적 특성과 은퇴에 대한 기대, 노후준비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연금저축 가입가계가 연금보험과 중복가입가계 보다 정규직인 경우 많이 나타났고, 은퇴에 대한 기대 관련 특성에서는 연금저축과 중복가입가계가 연금보험 가입가계 보다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게 나타났고, 노후준비 관련 특성에서는 연금보험 가입가계와 중복가입가계가 노후준비에 대한 충분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섯째,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 관련 변수에서는 노후준비 방법과 금액에 대한 충분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개인연금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개인연금 미가입가계 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으며, 본인은 안정적인 직업인 경우가 많고, 배우자는 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높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높게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가입한 가계는 재무적으로 안정된 가계이고, 재무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며, 금융지식이 높은 편해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개인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개인연금의 운영 상태나 수익률에 따라 개인연금의 유지율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회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금융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의 연금가입이 유지를 통해 노후의 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자영업자, 전문·관리직, 사무직 집단, 정규직 집단의 개인연금의 가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개인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정규직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개인연금 가입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집단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연금이라는 2층 보장체계가 없어 노후보장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안이 적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스스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연금의 장점 및 중요성, 개인연금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개인연금의 가입조건과 운용방법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미가입가계보다 예상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짧고, 현재 경제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이 높으며, 현재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비중은 낮지만 실제 비용은 높고, 노후준비 방법과 금액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게 나타났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계는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은퇴와 노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상태는 다를 수 있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한 노후 준비가 실제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계들은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된 재무적

노후준비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다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경우, 노후준비를 할 재정적 여유가 없어 개인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한 것일 수 있고, 노후와 은퇴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들도 객관적 기준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현재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비중은 개인연금 미가입가계가 가입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가계소득, 현재 경제수준과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수준은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미가입가계 보다 높았다. 현재소득수준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비중을 적용하여 은퇴 후 예상 생활비 금액을 계산하면,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미가입가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연금 미가입가계의 은퇴 후 예상생활비 비중이 개인연금 가입가계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연금 미가입가계는 노후준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지원과 개인연금의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보유한 연금상품을 비교해 보면, 연금저축(세제 적격)상품을 보유한 가계가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을 보유한 가계 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을 통한 정부의 개인연금 가입 유인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금저축 가입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연금보험 가입가계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의 역진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소득층 연금저축 가입가계의 경우, 연금저축이 실제 노후소득 자원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세제혜택을 다르게 적용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의 소비자가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보장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가입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상품의 경우, 연간 평균 납입액이 연금저축(세제 적격)상품보다 높았고, 일반연금보험은 평균 가입기간이 10.62년으로 다른 연금상품 보다 가장 길게 나타났다. 연금보험에 가입한 가계는 장기적인 재무설계를 통해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금보험상품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연금저축상품 보유 가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금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과 함께 상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가입유형(연금저축, 연금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가계의 특성은 고용형태, 은퇴태도와 노후준비에 대한 충분성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인연금상품의 구조나 특성이 가계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점과 금융소비자들이 상품별 특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가계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계의 니즈와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 상품의 구조나 상품별 특성에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연금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급제, 배우자가 있고, 대출이상이며, 비정규직이 아니고, 자가가 있으며, 방법과 금액 면에서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가계가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낮고, 3층 보장을 통한 노후준비가 부족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실제로 노후소득의 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경우 가입상품과 연금 보유상태에 따라 개인연금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개인연금 보유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연금 가입을 위한 정보 탐색 시,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판매채널의 홍보와 수수료 등에 따라 가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판매채널의 편하고 쉬운 접근성은 중요하고, 판매채널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판매채널에 따라 소비자 의사결정이 차이가 있는지와 채널 별로 행해지고 있는 홍보와 정보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높여서 노후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일 것이다. 장기 개인연

금 가입자들의 경우, 소득공제의 요건 충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는지, 연금 수령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 상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고,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상품이 소비자에게 효익이 크게 작용하여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가 적은 편이다. 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다른 금융 상품과 연금 상품을 비교하여 연금 상품이 소비자의 노후 삶에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가입 유형을 세제 혜택을 기준으로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중복가입으로 나누어서 보았지만, 개인연금 상품의 종류에 따른 가입 유형 또는 개인연금 지급 방식에 따른 가입 유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가 반영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인연금 가입자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2008),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도자료, 복합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11),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사적연금시장의 급성장,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13),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14),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4.1일부터 적용),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 기획재정부(2014),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 이상우(2011), 보험연구원, 개인연금의 이해(2) : 개인연금의 다양한 종류, 금융보험해설, 보험연구원.
- 이상우(2011), 보험연구원, 개인연금의 이해(3) :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금융보험해설, 보험연구원.
- 오병국(2011), 보험연구원, 개인연금의 이해(5) : 금융권역별 신 개인연금의 특징, 금융보험해설, 보험연구원.
- 오병국(2011), 보험연구원, 개인연금의 이해(6) : 변액연금과 자산연계형연금, 금융보험해설, 보험연구원.
- 오병국(2011), 보험연구원, 개인연금의 이해(8) : 연금의 세제지원, 금융보험해설, 보험연구원.
- 이경희(2011), 보험연구원, 『세계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 정기간행물, 동향분석실, 보험연구원

- 정원석(2014), 보험연구원,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효율화 방안』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보험연구원.
- 류건식(2014), 보험연구원,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보도자료, 보험연구원.
- 송윤아(2009),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KiRi Weekly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진익(2013), 연금수수체계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KiRi Weekly 포커스, 259, 보험연구원
- 문숙재·김연정(1997),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여부와 불입액이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265-277
- 주소현(2011), 개인연금 보유 및 연금불입액의 관련요인 분석 : 상속동기를 포함하여, 소비자학연구, 22(3), 183-206
- 이찬희·정홍주(2013), 개인연금 가입과 선호의 결정요인 분석 : 인지요인, 정서요인, 금융이해력, 신뢰, 위험감수성향을 중심으로, 금융연구, 27(4), 25-51
- 이태현(2013),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독일, 영국의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재호(2013), 개인연금 가입결정과 유지요인에 관한 분석-기업의 개인연금 보험료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24(4), 3-29
- 이현숙(2013),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경욱(2003), 미국 편모가계의 저축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6), 91-104
- 백은영(2012),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8(3), 63-86

전승훈·임병인(2008), 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자산 보유행위에 미치는 영향
과 정책시사점, 보험개발연구, 19(3), 83-117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
험개발연구, 17(1), 137-168

여윤경·이남희(2012), 개인연금자산의 수요와 적정성에 관한 분석, 보험금융
연구, 23(3), 63-93

박창제(2011),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7(4), 327-351

이순재·김현수(2009),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사
회보장연구, 25(3), 249-280

김병권·우석진·안종길·빈기범(2013),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형태에 미
치는 인과적 효과, 사회보장연구, 29(3), 53-79

남수정(2013), 필요노후생활비와 개인연금불입액의 종단적 분석 :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 적용, 소비자학연구, 24(1), 51-70

성주호·최운호·박준범(2014), 연금퍼즐에 대한 계리적 분석 및 대안적 연금
설계방안, 리스크관련연구, 25(1), 163-185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중산층 가계
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이윤호(2012), 개인연금수요의 구조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5(1), 195-210

주소현(2012), 프레이밍효과에 따른 종신연금 가입의사, 소비문화연구, 15(4),
81-98

주소현·정순희·최혜경(2012), 개인연금 가입자의 연금화 의향 분석, 소비자
분야 통합학술대회, 419-423

- 정운영·백은영(2009),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 관계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115-139
- 이진용(2010), 시간적 거리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제학적 접근 및 심리학적 접근의 비교분석 및 향후 연구 제안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3(4), 201-222
- 이승신(2012),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5(4), 43-61.
- 이경우(2013). 연금 퍼즐에 관한 연구: 건강 위험, 종신연금의 유동성 부족, 생존가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24(4), 75-107
- 류건식(2012),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모색-사적노후소득보장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 차경욱·박미연·김연주(2008),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고나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 주소현·정용주(2012), 연금퍼즐과 프레이밍,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133-162
- 박창제(2008),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39-166
- 주소현, 김세완(2012), 기대수명 증가와 종신연금, 소비자학연구, 23(4), 1-24
- 김희연·김재휘(2013), 미래에 대한 예측 방식과 자기 조절 모드가 연금 보험 가입 의도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학연구, 24(3), 51-73
- 문용필(2012), 중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비룡(199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화(1996), 개인연금보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원식(1996), 개인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 제2장 개인연금 제도의 내용, 한국금융연구원, 96(1), 4-45.
- 김원식(1996),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 제6장 개인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6(1), 178-203.
- 김용배(1996),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병인·강성호(2006), 국민, 퇴직,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험금융연구, 46, 89-121.
- 김수완·김순옥(2007),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전망 : 사적연금의 수급자수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3(2), 271-295.
- 양재환·여윤경(2010),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종신연금의 효용 가치 분석, 보험금융연구, 61, 105-141.
- 김재호(2011),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이 소득수준별 개인연금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보험금융연구, 65, 3-31.
- 김영대(2004),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 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1), 47-65.

- 통계청(2014), 가계동향조사 2014년 2/4분기.
- 전용식·변혜원·정원석 외(2014), 2014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 보험연구원, 164-181.
- 조경진·김순미(2012),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적 자본 투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자원경영학회지, 16(4), 131-152.
- 연금저축길라잡이 책자
- 연금저축통합공시길라잡이 책자
- Lee, W. & Law, K.(2004), Retirement planning and retirement satisfaction : The need for a national retirement program and policy in Hong Kong,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3(3), 212-233.
- Bernheim, Douglas(1991),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1076.
- Brown, Jeffrey F.(2001), Private Pensions, Mortality Risk, and the decision to Annuitize,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82(1), 29-62.
- Hurd. Michael D.(1987), Savings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 *American Economic Review*, 77, 298-312.
- Vidal, Calos & Anna Lejárraga(2004), The Bequest Motive and Single People's Demand for Life Annuities, *Belgian Actuarial Bulletin*, 4(2), 5-18.
- Yarri, M.(1965), Uncertain lifetime, Life insurance, and the theory of the consumer, *Review of Economic Studies*, 32, 137-150.
- Cappelletti, G., Guazzarotti, G., & Tommasino, P.(2011), What determines annuity demand at retirement?, *Bank of Italy, Working paper #805*, 1-38. Retrieved from <http://ssrn.com/abstract=1849826>.

- Inkamann, J., P. Lopes, and A. Michaelides(2011), How deep is the annuity market participation puzzle?,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4(1), 279-319.
- Joo, S.-H. & Pauweles, V. W.(2002), Factors affecting workers' retirement confidence : *A gender perspectiv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3(2), 1-10.
- Liberman, Nira & Trope, Yaacov(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18.
- Trope, Yaacov & Liberman, Nira(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 Trope, Yaacov & Liberman, Nira(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Staples, P. A.(1998),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life-long career development among adolescents, young adults, and midlife adult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DeMaris, A.(1992), *Logit modeling: Practical application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086. Newbury Park, CA: Sage.
- Pampel, f. C.(2000), *Logistic regression: A primer*.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132, Newbury Park, CA: Sage.

보험연구원 홈페이지 <http://kiri.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main.html>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mosf.or.kr>

〈부록〉 설문지

조사대상

- 전국 만 20세 ~ 만 59세 성인 남녀 500명
- 가계의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를 주로 하는 자가 응답
- ※ 학생 제외, 무직 제외, 주부 포함
- 연령대별 유의할당: 20대 30대 40대 50대 각 25%씩

SQ 1. 귀하 또는 귀하 가계의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는 주로 누가 하십니까?

- ① 내가 주로 한다.
- ② 나와 배우자와 함께 한다.
- ③ 배우자 혼자 독립적으로 한다. ⇒ 응답중단
- ④ 부모가 독립적으로 한다. ⇒ 응답중단

다음은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하 또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2번으로
- ② 없다 ☞ 3번으로

2. 귀하와 배우자가 가입한 개인연금 종류에 √ 표시하시고, 가입기간과 연간 납입액을 적어 주십시오.

1)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우체국 등을 통해 가입합니다.

| 종류 | 본인 | | | 배우자 | | |
|---------|-----------------------|-------------------|--------|-----------------------|-------------------|--------|
| | 가입여부 | 가입기간 | 연간납입액 | 가입여부 | 가입기간 | 연간납입액 |
| ①연금저축신탁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 ②연금저축펀드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 ③연금저축보험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2)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합니다.

| 종류 | 본인 | | | 배우자 | | |
|-----------------------------|-----------------------|-------------------|--------|-----------------------|-------------------|--------|
| | 가입여부 | 가입기간 | 연간납입액 | 가입여부 | 가입기간 | 연간납입액 |
| ① 일반연금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 ② 변액연금, 자산연계형 연금 등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_____년 _____개월 | _____원 |

3.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부터 1-3순위의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개인연금상품에 대해 잘 몰라서
- ②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금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 ③ 수수료가 높고 해지가 어려우며, 상품이 복잡해서
- ④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⑤ 노후에 연금 보다는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⑥ 일찍 사망하면 연금이 손해일 것 같아서

⑦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어서

⑧ 기타 (이유를 적어주세요) _____

4. 귀하께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가입의향이 있다.

② 가입의향이 없다.

다음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는 은퇴가 어느 정도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v 표시해 주세요.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매우 가까운 일이다.-----매우 먼 일이다.

2. 가계의 경제수준을 10단계로 나눈다고 가정할 때, 현재 귀하 가계의 경제수준과 은퇴 이후에 예상되는 경제수준을 숫자로 표기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하 ----- 중
-----상

1) 현재의 경제수준 ()

2) 은퇴 이후에 예상되는 경제수준 ()

3. 귀하의 가계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_____%

4. 귀하의 가계가 현재 하고 계신 노후준비는 방법과 금액 면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 |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 충분하지 못하다 | 보통 이다 | 충분하다 | 매우 충분하다 |
|---------|-------------------|-------------|----------|------|------------|
| 노후준비방법 | | | | | |
| 노후준비 금액 | | | | | |

5. 다음 중 귀하 또는 배우자가 가입하고 계신 연금제도에 v표시해 주시고, 가입한 경우에는 각 연금이 노후생활을 대비하기에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입여부 | 노후대비의 충분성 | | | | |
|----------------------------------|-----------------------|------------------|------------|----------|----------|----------------|
| | | 전혀 충분하지 않다 | 충분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충분 하다 | 매우 충분 하다 |
| 1) 국민연금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 | | | |
| 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 | | | |
| 3) 퇴직연금 | 가입 _____ 미가입 _____ | | | | | |

6. 귀하 가계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입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3순위의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 ② 퇴직연금, 퇴직금
- ③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④ 은행 예금상품
- ⑤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 ⑥ 부동산자산과 그에 따른 재산소득
- ⑦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짐으로써 얻게 될 근로소득, 사업소득
- ⑧ 자녀의 경제적 지원

⑨ 기타 ()

7. 귀하의 은퇴예상 연령은 몇 세입니까?
(주부인 경우, 배우자의 은퇴예상 연령을 적어주십시오.)

만 _____세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1. 은퇴 및 노후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싶다. | | | | | |
| 2 | 은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 | | |
| 3 | 노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 | | | | |
| 4 | 노후의 삶은 전반적으로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 | | | | |
| 5 | 노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 | | | | |
| 6 | 노후에는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 | | | | |
| 7 | 노후에는 자녀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 쉽다 | | | | | |
| 8 | 노후에는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기 쉽다. | | | | | |

2. 귀하의 평소 생각 및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유혹을 잘 참는다 | | | | | |
| 2 |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은 하지 않는다. | | | | | |
| 3 | 나는 게으르다. | | | | | |
| 4 | 나는 부적절한 말들을 한다. | | | | | |
| 5 | 나는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도, 재미만 있다면 그 일을 한다. | | | | | |
| 6 | 나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가 힘들다. | | | | | |
| 7 | 나는 내가 좀 더 자제력을 가지기를 바란다. | | | | | |
| 8 | 나는 종종 모든 대안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 | | | | |
| 9 | 나는 때때로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빠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 | | | | |
| 10 | 나는 집중하기가 힘들다. | | | | | |
| 11 |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 | | | | |
| 12 | 때때로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멈출 수 없다. | | | | | |
| 13 | 사람들은 내가 강한 자제력을 가졌다고 말한다. | | | | | |
| 14 | 나는 상황이 불확실할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편이다 | | | | | |
| 15 | 나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느끼면 그렇게 되는 편이다. | | | | | |
| 16 |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 | | | | |
| 17 | 나는 대체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 | | | | |
| 18 | 나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다. | | | | | |
| 19 | 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 | | | | |

울산)

③ 시 단위 중소도시

④ 군/ 읍/ 면

8. 귀하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연간 총소득을 합한 뒤, 12로 나눈 액수를 적어주십시오.)

_____만원

ABSTRACT

Comparis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oldings and Types of Annuities

Koo, Ji-yeon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ging speed gets faster in Korea after entering to the aged society in 2000,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An increase in average lifespan and younger retirement age at the same time have caused increased burden for aged life and also increased the necessity of interest i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savings. Preparation of retirement savings is important for a stable financial state of individual and household and for government's social security.

Annuity can be joined by individuals spontaneously and money due can be adjusted flexibly and females, workers for small companies, sole proprietors, and lower-income groups, that have a limitation in getting

retirement annuity, can use annuity as a means to secure income for their aged life and government also encourages such annuity as a way to retirement preparation through tax favor, however, it is hard to consider that market of annuity is largely activated yet.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ccording to the fact whether they joined annuity or not and to types of such annuity and to understand the annuity-owning features of households that joined annuity and, if there were any households that had not joined annuity, the reasons why they had not joined annuity. It also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helpful for making a decision whether to join annuity and to look into plans for encouraging people to join annuity. The results from performing descriptive statistic compiling, a mean comparison between groups (t-test, ANOVA), a cross analysis (X^2 -test), an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20 and 59, who mainly managed financial transactions and assets of their households, using online survey materials, are as follows.

Summary and discussion about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dividing targets of investigation into joined households and unjoined households, joined households were 278 (55.3%) while unjoined households were 225 (44.7%).

As a result of analyzing a difference in features of household according to the fact whether they joined annuity or not, variables of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occupation, employment status, spouse's employment status, owning of car, and annual household income and variables of features related to retirement prepar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time remained until the predicted retirement, a subjective recognition on the current economic level, a subjective recognition on the predicted economic level after retirement, predicted importance of living expenses after retirement compared to the current living expense, the amount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verage households joining annuity were older than those not joining annuity and had spouses, higher education level, and stable jobs and their spouses were permanent workers and they had higher possibility to own a car and their average annual income was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join annuity. Furthermore, households joining annuity had shorter time left until predicted retirement and evaluated their current economic level highly and had higher predicted economic level after retirement and the importance of predicted living expenses after retirement was low but actual expenses were high and they considered that a way to and the amount of retirement preparation were enough and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retirement, compared to those not joining annuity.

Second, as a result of comprehending unjoined households' reasons of not joining annuity and intention to join annuity, a reason having the highest percentage was 'onerous amount of annuity' and that having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was 'high commission, difficult cancelation, and complex annuity product' and that having the third highest

percentage was 'managing retirement preparation in other ways' and 'preferring to have a large sum of money rather than saving for annuity'. Furthermore, when unjoined households (n=225) were asked whether they had an intention to join annuity, 121 of them (53.8%) said to be interested in joining annuity while 104 (46.2%) would not want to join annuity.

Third, to analyze annuity-owning statuses and features of joined households, annuity products bought for annuity, the number of products bought, the average contracted period and the average annual payment of annuity were analyzed.

The number of households, among 278 households joining annuity, who joined annuity saving (tax qualified annuity) product were 228 (46 joining annuity saving trust, 39 joining annuity savings fund, 185 joining annuity savings insurance) and households joining annuity insurance (tax exempted annuity) were 104 (55 joining general annuity insurance, 55 joining variable insurance · asset-connected annuity insurance)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joining annuity savings were higher than those joining annuity insur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verage contracted period of households joining annuity was 8.62 years and the average annual payment of such was 2.3105 million won and the average contracted period of annuity savings (tax qualified annuity) was 8.54 years and the average annual payment of such was 2.7786 million won and the average contracted period of annuity insurance (tax exempted annuity) was 8.63 years and the average annual payment of such was 3.1457 million won.

Fourth,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joining annuity according to type of joining,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those joining annuity savings (tax qualified annuity) (n=174), those joining annuity insurance (tax exempted annuity) (n=50), and those joining both products (n=54) to analyze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and features related to golden years.

Households joining annuity savings who were permanent workers showed higher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compared to those joining annuity insurance and those joining both products and, in case of features related to retirement expectation, those joining annuity savings and those joining both product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retirement than those joining annuity insurance did and those joining annuity insurance and those joining both produ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dequacy of retirement preparation compared to those joining annuity savings.

Fifth,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factors affecting the joining of annuity, in case of social and economic variables, households having spouse and higher education level and owning a car show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ining of annuity and, for variables related to retirement preparation, those who recognized that the way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its amount were highly adequate showed variable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ining of annuity.